

판 결

사 건 [REDACTED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어린이보호구역
치상)

피 고 인



검 사



변 호 인

변호사 조효동(국선)

판 결 선 고

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.